



이주 노동자의 책임있는 모집 및 고용 원칙

핵심 원칙 A

모든 노동자는 차별없이 평등하게 대우받습니다
이주 노동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을 다른 노동자들과 같은 대우 받아야 합니다. 또한 이주 노동자들은 인권 침해로 간주되는 차별에서 보호 받아야 합니다.

핵심 원칙 B

모든 근로자는 고용 법의 보호를 받는다
이주 노동자는 작업이 수행되는 국가에서 식별 가능한 합법적 고용주와 법적으로 인정 된 고용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.

원칙 1

이주 노동자들에게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
고용주는 모집 및 배치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. 이주 노동자는 채용이나 배치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.

원칙 2

모든 이주 노동자 계약은 명확하고 투명합니다
이주 노동자는 각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강압없이 근로자가 동의 한 서면 계약서를 제공 받아야 합니다.

원칙 3

정책과 절차는 포괄적입니다
이주 노동자의 권리는 고용주와 이주 노동자의 인권 정책 진술, 관련 운영 정책 및 인권 책임을 다루는 절차에서 명시 적으로 언급되어야 한다.

원칙 4

이주 노동자의 여권이나 신분 증명서는 보관되지 않습니다
이주 노동자들은 자신의 여권, 신원 확인 서류 및 거주지 서류를 자유롭게 완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동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.

원칙 5

임금은 정기적으로, 직접, 그리고 제 시간에 지불됩니다
이주 노동자는 정해진 시간에 정기적으로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.

원칙 6

근로자 대표권은 존중됩니다
이주 노동자는 노동 조합에 가입하고 형성하고 다른 노동자와 같이 집합 적으로 교섭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.

원칙 7

근무 조건은 안전하고 좋습니다
이주 노동자는 위험하고, 위협적이거나,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, 안전하고 적절한 노동 조건을 누려야 합니다. 적절한 언어로 적절한 보건 및 안전 규정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
원칙 8

생활 환경은 안전하고 좋습니다
이주 노동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활 조건과 직장과 숙박 시설 사이의 안전한 출퇴근이 보장되는 것이 좋습니다. 이주 노동자들은 이전의 자유를 거부 당하거나 자신의 거주지에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.

원칙 9

구제 수단이 제공됩니다. / 구제를 위한 접근이 제공된다
이주 노동자들은 고소 나 해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법 구제와 신뢰할 수 있는 고충 처리 메커니즘에 접근 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원칙 10

고용을 바꾸는 자유는 존중되고 안전하며 올바른 귀향이 보장됩니다
이주 노동자는 계약 완료 및 예외적 인 상황에서 귀가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. 하지만 그들은 첫 번째 계약이 완료되거나 2년 후에 어느 쪽이든 더 적은 기간에서 호스트 국가에서 고용을 추구하거나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.

IHRB가 개발한 Dhaka Principles은 근로자를 채용, 고용, 계약 종료까지 추적하는 로드맵을 제공하며 고용주와 이민자 모집자가 존엄성있는 이주를 보장하기 위해 각 단계에서 존중해야 하는 핵심 원칙을 제공합니다.